

의안번호	제 143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임 기 중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9년 2월 26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임기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
----------	-----

발의연월일: 2019년 2월 26일

발 의 자: 임기중,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박성원, 이의영,
황규철의원

1. 제안이유

충청북도 학생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발생을 줄이고,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학교폭력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 라. 학교폭력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를 규정함(안 제5조)
- 마.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 사. 학교폭력근절 문화 조성을 규정함(안 제8조)
- 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주간을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자. 자문기구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10조)
- 차. 학교폭력 관련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11조)
- 카. 관계기관과의 협조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 생활지도담당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9-6호
2019. 1. 29. ~ 2019. 2. 18.(특이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치유와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치유,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필요한 교육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홍보 등 학교폭력 예방활동
3. 학교폭력 실태조사

4. 피해학생 보호·치료·재활 등 지원
5.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등 지원
6. 학교폭력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단체 등과의 협조
7.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피해·가해학생 지원) 교육감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상담기관 및 상담프로그램 지원
2. 전문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지원
3.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
4.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학교폭력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폭력근절 문화 조성)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캠페인, 홍보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 근절 문화조성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주간 지정·운영) 교육감은 학생폭력 예방과 근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자문기구 설치·운영) 교육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와 법 제1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 조치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상담 및 치료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1. 28.] [법률 제15044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 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교육감은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5. 12. 22.>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⑩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26.>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2. 1. 26., 2012. 3. 21.>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

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④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제목개정 2011. 5. 19.]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개정 2012. 3. 21.>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2. 3. 21.>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2. 3. 21.>

⑦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⑧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제목개정 2011. 5. 19.]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반영
-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7.11.28.)

2. 비용 발생 요인

- 안 제6조(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 안 제7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교육 운영비)
- 안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운영비)

3. 관련조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6조(피해·가해학생 지원) 교육감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상담기관 및 상담프로그램 지원
2. 전문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지원
3.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
4.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교육 및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의무화함으로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상담 및 치료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2018.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비 적용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간 소요비용 추계		연도별 소요비용 추계(단위: 천원)					
산출기초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1. 피해·가해학생 지원	245,000	245,000	245,000	245,000	245,000	245,000	1,225,000
가.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운영 80,000,000원 × 1기관 =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나.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운영 30,000원 × 1,500일 =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다. 위기학생 힐링 치유캠프 운영 30,000,000원 × 2기관 =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라.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치료 15,000,000원 × 4개 병원 =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2.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연수 1,500,000원 × 10기관 =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3. 관계기관과의 협조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105,000
가. 유관기관 합동워크숍 10,000,000원 × 1회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나. 교육(지원)청-유관기관협의회 1,000,000원 × 11기관 =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55,000
합 계	281,000	281,000	281,000	281,000	281,000	281,000	1,405,000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6. 작성자 : 교육국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281,000	281,000	281,000	281,000	281,000	1,405,000	
보통교부금	281,000	281,000	281,000	281,000	281,000	1,405,000	
세 출	281,000	281,000	281,000	281,000	281,000	1,405,000	
참석수당	281,000	281,000	281,000	281,000	281,000	1,405,000	
재원 조달	281,000	281,000	281,000	281,000	281,000	1,405,000	
의존 재원	소 계	281,000	281,000	281,000	281,000	281,000	1,405,00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281,000	281,000	281,000	281,000	281,000	1,405,00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